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49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맹건의 견종 확대	3
2. 맹건의 출입금지 장소 확대	6
3.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1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 외에도 중

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맹견의 견종 확대

현행법은 법률에서 명시하는 3개 견종(도사견, 핏불테리어 및 로트와일러)과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규정된 2개 견종(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및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의 총 5개 견종을 맹견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을 통해 맹견 범위에 포함하는 2개 견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새로이 5개 견종(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캥갈 및 울프독)과 그 잡종을 맹견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u>로트와일러</u>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 <u>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캥갈, 울프독과 그 잡종 및</u> -----

현행	개정안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6. ~ 13.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현행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도사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¹⁾ 이들에 대하여 사육허가, 소유자 준수사항, 출입금지, 보험 가입 등의 관리규정을 두어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²⁾

현행법령에서 지정하는 맹견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최근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맹견의 견종을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동물보호법」상 맹견 사육에 관한 주요 관리규정

조	조 이름	주요 내용	위반 시 벌칙
제18조	맹견사육허가 등	맹견 사육 시 <u>시·도지사의 허가</u> 필요	징역 또는 벌금
제21조	맹견의 관리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u>준수사항</u>	과태료 이상*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u>출입금지</u>	과태료
제23조	보험의 가입 등	맹견 피해보상 관련 <u>보험 가입 의무</u>	과태료

*제21조의 경우, 단순 위반시 벌칙은 과태료이나, 사망·상해 발생시 벌칙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함.

이에 개정안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견종을 맹견으로 확대 지정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로 보여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소유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의무와 위반 시 벌칙 등을 규정하여, 새로이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맹견의 견종 확대에 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맹견 지정을 확대하는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 토종 견종들에 대하여도 추가적 지정 필요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실제로 안전사고를 유발한 개의 경우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만큼,³⁾

맹견의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견종의 공격성, 맹견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한 사례조사·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2.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확대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기구 및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체육시설 및 대규모점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1. ~ 2. (생략)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u>초등학교 및 특수학교</u> .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 ----- ----- ----- ----- <u>다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정한다)에 출입할 수 있다.</u> 1. ~ 2. (현행과 같음) 3. ----- <u>제2조</u> ----- ----- <u>학교</u>

현행	개정안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u><신설></u>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u><신설></u>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u><신설></u>	1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 (생략)	12. (현행 제8호와 같음)

맹견은 사람의 생명·신체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⁴⁾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⁵⁾·사회복지시설⁶⁾·의료기관·체육시설 및 대규모점포를 맹견의 출입

4)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5)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입금지 장소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할 입법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노약자·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장소로, 그 외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데,⁷⁾

개정안에서 확대하고 있는 출입금지 장소 중 체육시설·대규모점포 등은 현행법의 예시와는 달리 단순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일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 히. (생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또한, 개정안에서 출입금지 장소로 확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미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⁸⁾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을 포함하여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의 확대가 맹견 소유자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확대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자체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도 존재하는 만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한해서는 출입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8)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업에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므로(제2조제1호), 이들 법률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제2조제4호).

3.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공표 대상에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물림 사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물림 사고 현황 및 그 건종에 관한 사항</u>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제95조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맹견에 대한 정보와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물림 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 관련 정보 수집·관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물림 사고 현황 및 그 건종에 관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최근 개물림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역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9) 「동물보호법」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동물보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한 자 및 신고한 자가 소유한 맹견에 대한 정보
2.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허가철회를 받은 사람 및 허가받은 사람이 소유한 맹견에 대한 정보
3.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라 기질평가를 받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
4.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영업의 허가 및 등록 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포함한다)
5. 제94조제1항 각 호의 정보
6.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정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최근 맹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로써 맹견 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물림 사고 현황 등의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7